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09
----------	--------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심의사유 발생 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안 제12조제5항)

○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

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 보완(안 제12조제7항 및 제9항)

○ 심의회 개의 및 의결 요건(안 제12조제7항)

○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9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8. 1. ~ 8. 21.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에 주소를 둔,”을 “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각종 기금, 지방채”를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으로, “과도한”을 “지나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을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성명·생년월일·주소(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성명·생년월일·주소”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을”을 “생년월일 및 주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를 “서명을 확인하려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마포구”를 “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마포구의회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가”로, “마포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단체대표”를 “시민단체 대표”로,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7항 중 “찬성”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수리여부의”를 “수리 여부의”로, “교부 수리여부”를 “교부 또는 수리 여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휴대용확성장치만”을 “휴대용 확성장치만”으로 한다.

제16조 중 “이상과 구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한다”를 “이상에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 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 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 다)에 <u>주소를 둔</u>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 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 <u>의 외</u> <u>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u> ---- -----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다수 <u>주민의 이용에 제공하</u> <u>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u> <u>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u>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u> <u>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u> <u>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u> <u>부담을 주는 사항</u> 5. <u>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u> <u>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u> <u>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u> <u>을 듣도록 한 사항</u>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u>주민이 이용하는 주요</u> <u>공공시설</u> ----- ----- 4. <u>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u> <u>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u> ----- ----- <u>지나친</u> ----- ----- 5. <u>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u> ----- ----- -----

6. (생 략)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

6. (현행과 같음)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성명·생년월일·주소(국내 거주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
를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
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생
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
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
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생략)

1. ~ 4. (생략)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 심의회
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생년월일 및 주소를

---. ----- 서명을 확인하
려고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선
출한다.

③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마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마포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생략)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사람 -----
-----.

1. 구 -----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 -----
시민단체 대표 ----- 상응하는 -----

4. ----- 관련 분야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⑧ (현행과 같음)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⑩ (생략)

제13조(처리기간)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있다.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리 여부 -----

교부 또는 수리 여부-----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휴대용 확성장치만-----

-----.

제16조(공표·공고 방법) -----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
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
·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한
다.

----- 이상에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서은영
연 락 처	02-3153-8302